

인도네시아의 신 투자법 개관

- 외국인 투자자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

이 준 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특집]

2012년도 제1호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협력 강화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는 신흥시장국 MIKT(Mexico, Indonesia, Korea, Turkey)에 대한 투자관련 법제정보로 구성합니다.

I. 시작하며

II. 인도네시아 신 투자법의 분석

1. 신 투자법의 개관
2. 신 투자법의 구성
3.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

III. 마치며

I. 시작하며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라 한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결국 이윤추구라는 동기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의 '이윤'이라는 것에는 단순하게는 값싼 노동력에서부터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 시장의 규모와 같은 요인들이 포함되겠지만, 나아가 상표·특허·영업비밀·산업디자인과 같은 지적 재산권의 보장, 투자자 인센티브, 통상에 있어서의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대이익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활용 가능한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과 더불어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한 무역활동이 용이하다는 점, 2억 4천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곧 시장의 잠재력임과 동시에 저렴한 노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자유로운(free-flow) 외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¹⁾ 등은 인도네시아의 잠재적 투자환경을 높게 유지하는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다.²⁾

인도네시아는 그 경제발전예 따라서 FDI 부문에 대한 매우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인도네시아의 독립 직후였던 Soekarno 정부 하에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Suharto 정부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의 문호가 점차 개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67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Act No. 1 of 1967 on Foreign Investment, 이하 '구 투자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에는 FDI에 대한 국제협약의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2007년 제정된 자본투자에 관한 법률(Law No. 25 of 2007 regarding Capital Investment, 이하 '신 투자법'이라 한다)에는 WTO협정상의 비차별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이나 국내시장 진입에 대한 외국인의 권리 등의 조문들이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신 투자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각각 분리되어 있었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과 내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을 비로소 통합하게 되었다. 이 법은 형식적으로는 구 투자법과 그 이행규칙 일부를 통합한 것이나, 비차별의 원칙, 투명성의 확립, 투자승인절차, 토지에 대한 권리, 인센티브 등 다수의 주목할 만한 조항들이

1) 따라서 자본 환급을 포함한 외환의 흐름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Art. 2 para. 1, Parliamentary Act No. 24 of 1999 on Foreign Exchange Flow and Exchange Rate System.

2)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2011년 9월까지의 3분기 총 투자액은 143억 달러(USD)에 이르며, 이를 통하여 총 3,500건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bkpm.go.id/app/webroot/mobile/content/news.php?i=915&d=1&m=40>> 참조.

이 법에 새롭게 포함되어 있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허가의 통합 일원화 서비스(One-stop Integrated Service),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체제(Dispute Settlement Mechanism)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실제로 현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신 투자법의 제정 이후, 다른 이행규정과 세부규정들을 통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와 법령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2007년 제정된 신 투자법과 이 법률에 따라 제·개정된 하위 법령들, 이를 테면 대통령령 제36호(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10)에 의하여 개정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과 폐쇄에 관한 사업 분야 목록(이른바 ‘2010년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주요 예외 사항들과 더불어 투자절차 및 기본 틀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이하 ‘BKPM’라고 한다)의 일부 규정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11년에는 투자 관련 법령들의 특별한 제·개정 사항은 없었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한 대통령령 또한 2010년 초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2007년 제정된 투자법이라고 하더라도 MIKT라는 성장국가군에 대한 투자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신 투자법과 그 하위 법령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생각한다.³⁾

II. 인도네시아 신 투자법의 분석

1. 신 투자법의 개관

신 투자법의 제정은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에 이정표가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으며,⁴⁾ 현 시점에서 투자 관리에 관한 주요한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

3) 인도네시아 투자법제의 발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arsudi Triatmodjo · Lee junseo · Mailinda Eka Yuniza · Agustina Merdekawati · Inda Rahadiyan · Eldo Kredainou Alwi, A Study on the Investment Law of Indonesi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한국법제연구원, 2012를 참조.

4) 2007년 신 투자법의 제정 이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이 승인한 외국인투자 금액은 지난 3년(2004~2006년)간의 승인금액보다도 많은 40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6년 대비 무려 156.4%나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희연,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와 향후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2, No.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5), 2쪽 참조.

아의 WTO 가입 이후, 경제적인 자유화와 세계화의 요청을 수용한 다수의 조항들이 이 법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법이 갖게 되는 의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 투자법의 제정은 인도네시아의 긍정적인 투자환경의 창출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구 투자법이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투자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법의 개선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는 1967년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법(Law No.1 of 1967)을 제정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1968년 내국인 투자법(Law No.6 of 1968)을 제정하면서 투자와 관련된 법제를 완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분된 투자 정책은 40여 년이나 유지되어 오다가 2007년 신 투자법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2. 신 투자법의 구성

신 투자법은 18개의 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제1장의 총칙(General Provision)에 이어, 제2장에서는 원칙과 목적(Principles and Objectives)에 대해서, 제3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기본 정책(Basic Policy of Investment)에 대해서, 제4장에서는 회사의 형태와 소재지(Form of Corporation and Domicile)에 대해서, 제5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조치(Treatment to Investment)에 대해서, 제6장에서는 노동력(Manpower)에 대해서, 제7장에서는 업종(Business Field)에 대해서, 제8장에서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발전(Investment Development to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ooperatives)에 대해서, 제9장에서는 투자자의 권리, 의무, 책임(The Rights, Obligation, and Liability of Investor)에 대해서, 제10장에서는 투자시설(Investment Facility)에 대해서, 제11장은 회사의 합법화와 허가(Company Legalisation and Licensing)에 대해서, 제12장은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olicy)에 대해서, 제13장은 투자의 구성(Organisation of Investment)에 대해서, 제14장은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에 대해서, 제15장은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에 대해서, 제16장은 제재조치(Sanctions)에 대해서, 제17장은 경과규정(Transitional Provisions)에 대해서, 제18장은 부칙으로 효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정하고 있다.

5) 구 투자법은 12개의 장, 3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3.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

신 투자법은 직접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법 앞에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도록 규정하여 직접 투자와 관련한 내·외국인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하였으며, 투자 자산의 국유화 금지, 과실송금 보장 등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 투자법은 비단 이와 같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득세 감면,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감가상각 가속, 토지세 감면 등 투자자에게 실제적인 투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 투자법에 따라 BKPM은 각 부처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모든 승인권한을 위임 받아 인·허가에 대한 일원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개선점이라 할 수 있다.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하에서는 이 중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 있는 부분만을 선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6조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
제7조	투자자의 소유권 보장 - 정부는 법에 의한 경우 외에 국유화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 가격에 따른 보상을 함
제8조	과실 송금 이전의 자유 보장 - 투자자가 지정하는 곳으로의 자산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 자본, 이익, 은행이자, 배당금 및 기타 소득, 로열티, 투자분야 외국인 종사자의 소득, 청산 소득 등을 외국화폐로서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12조	투자 제한·금지 분야 및 업종 - 외국인 투자자는 무기, 탄약, 폭약, 군장비 및 법에 의해 금지된 분야의 투자가 금지되며, 내·외국인 투자자도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결정
제14-17조	투자자의 권리, 의무, 책임 - 투자자는 법과 규정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받으며, 선한 기업경영의 원칙 이행, 기업의 사회적 의무, 자본투자 행위에 대한 BKPM 보고, 법과 규정의 준수 등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함
제18조	조세혜택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 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 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중지 -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제22조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 - 토지경작권: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 최장 70년까지 가능
제23조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 - 자격을 갖춘 투자자 중 투자조정청의 추천에 따라 2년간의 거주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입국 사증부여, 2년 이상 인도네시아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기능 등
제25-26조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을 통해 획득
제27-28조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 - 정부는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이 임명
제32조	외국 투자자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 - 정부와 외국투자자 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출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2010 투자핵심가이드, (2010. 12), 21-23쪽.

1) 개념정의

비록 신 투자법이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과 내국인 투자법을 통합한 것이라고 해도, 법률 상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 법에서의 ‘투자(Investment)’란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투자활동을 말하는데(Art. 1, para. 1), ‘내국인투자(Domestic Investment)’란 내국인 투자자(인도네시아 국민, 법인, 인도네시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에 의한 인도네시아 내 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활동을 의미하고(Art. 1, para. 2),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란 외국인 투자자(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포함된다)가 외자 또는 국내자본과의 합자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내 회사에 투자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Art. 1, para. 3). ‘외자(Foreign Capital)’란 모든 외국 정부, 외국인, 외국 회사,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이 일정부분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 소유의 모든 자본(금전적 가치를 포함)을 의미하고(Art. 1, para. 8), ‘내자(Domestic Capital)’란 인도네시아 정부, 국민, 법인 또는 비법인이 소유하는 자본을 의미한다(Art. 1, para. 9).

2) 원칙과 목적

신 투자법에서 밝히고 있는 이 법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 개방

(openness), 책임(accountability),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연대(togetherness), 공정한 효율(impartial efficiency), 지속가능(sustainability), 친환경(environmental friendly), 자립(independency), 균형발전(balance of progress)과 국내경제의 통합(national economic unity)이다(Art. 3(1)).

이 법의 목적은 경제성장의 증진, 일자리의 창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가 경쟁력의 향상, 국가 기술능력의 증진, 국민경제의 발전 고양, 국내·외로부터의 기금을 통한 실물경제의 잠재력 향상, 지역사회의 번영에 맞추어 있다(Art. 3(2)).

3) 동등한 대우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신 투자법의 제정 이전에는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에 관한 법을 각각 분리하였으나, 신 투자법은 제1조와 제2조 및 제4조 제2항에서 이 법이 국내·외 투자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 투자법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인데('to provide the same treatment to any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이는 곧 외자와 내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정 업종을 개방하지 않거나,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을 정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BKPM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 회사설립의 최소자본기준(Minimum Capital Requirement)⁶⁾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나 명문화되지 않은 정책(unwritten policy)들 자체가 이 조항에 의하여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대통령령에 따른 투자규제 업종목록에는 외자와 내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내자에게 허용되는 많은 투자분야가 외자 투자에게는 금지 내지 조건적인 경우도 있다.

4) 투자자의 소유권 보장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투자자의 소유권에 대하여 어떠한 국유화나 공공수용에 관한 조치도 시행할 수 없다(Art. 7(1)). 정부가 국유화 또는

6) 현행 최소자본기준은 USD 250,000이다.

공공수용을 할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 또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Art. 7(2)). 이때 시장가치의 평가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지명된 제3의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만약 보상가액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진다(Art. 7(3)).

5) 자금 이체 및 송금의 보장

신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하여 세금과 로열티를 비롯한 다른 금융상의 지불의무를 준수하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하여 자본, 수익, 은행이자, 추가 자금, 대출상환, 로열티, 소득, 청산 잔액, 투자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외환에 관하여 자유로운 외환의 이체와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Art. 8(3)).

6) 투자 제한 업종

기본적으로 무기·탄약·폭약·전투장비와 같은 군장비시설의 경우 외국인 투자업종으로 제한을 받지만(Art. 12(2) para. a), 이 법에 의하여 명시된 투자제한 및 조건부 투자개방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Art. 12(1)).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보건·문화·환경·국방·안보를 비롯한 국익에 대한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분야와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Art. 12(3)). 또한 정부는 특정 분야와 업종에 대한 조건부 개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자연자원의 보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보호, 생산과 분배의 감시, 기술능력의 향상, 내자의 분담, 정부가 지정한 회사에 대한 합작 투자 등의 이유가 수반되어야 한다(Art. 12(5)).

신 투자법을 제정·공포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Presidential Regulation No. 77 of 2007)을 통하여 투자제한업종(closed line of business)과 조건부 투자개방업종(open line of business with conditions)을 정리함으로써 직접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 관련 법률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신 투자법과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투자법 일반과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의 기본 체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현행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는 2010년 개정된 대통령령(Presidential Regulation No.36 of 2010)으로서 2007년 리스트를 개정한 것으로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2007년 리스트 보다 투자 제한이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 투자제한업종

2010년 개정된 투자제한업종(Closed Business Fields)에 대해서는 2007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활동이 제한된다. R&D와 같이 해당 업종에 대한 비상업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리스트는 적용되나, 이 경우 개발사업 분야에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는 있다.

〈표 2〉 투자제한업종 목록

	분야	업종
1	농업	마리화나 경작
2	임업	1. CITES협약 부속서 I 에 등재된 어종의 포획 2. 원료/석회/칼슘 및 기념품/장신구의 제작을 위한 자연산 산호의 이용(제거)
3	산업	1. 주류업(술, 와인, 맥주 등 맥아가 포함된 음료) 2. 수은, 염소, 알칼리 주조 산업 3.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관한 산업 - 할론 - 펜타클로로페놀, DDT, 디엘드린, 클로르데인, 4염화탄소, 메틸 클로로폼, 메틸 아취소산, CFC 4. CWC협약 표 1의 화학물질에 관한 산업
4	교통	1. 지상터미널의 제공 및 유지 2. 검문소의 유지 및 운영 3. 차종 검사 4. 자동차 정기 점검 5. 항행 통신/지원 설비 6. 선박 운항 정보 시스템(VTIS) 7. 항공 운항 안내 서비스
5	정보·통신	라디오 주파수 및 위성궤도 스펙트럼 모니터링 장치의 관리 및 유지
6	문화·관광	1. 국립 박물관 2. 문화유산(사원, 성, 비문, 고대유적 등) 3. 주거환경/전통 환경 4. 기념비 5. 도박업/카지노

투자제한업종은 총 6개 분야 2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 업종에는 농업·임업과 같은 1차 산업, 주류업, 환경보호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화학 산업, 교통·통신 관련 기간산업, 정보·통신 관련 산업,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문화·관광산업의 일부가 포함된다.

(2) 조건부 투자개방업종

조건부 투자개방은 농업분야, 임업분야, 해양·어업분야, 에너지·광물자원분야,

산업분야, 국방분야, 공공분야, 무역분야, 문화·관광분야, 교통분야, 정보·통신분야, 금융분야, 은행분야, 노동·이주분야, 교육분야, 보건분야, 보안분야 등 총 17개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다수의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분류가 가능한데, (a)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 유보, (b) 동업, (c) 외자소유, (d) 특정 지역 내, (e) 별도의 허가, (f) 100% 현지자본, (g) 외자 및 토지소유, (h) 별도의 허가 및 외자소유, (i) 100% 현지자본 및 별도의 허가, (j) 외자소유 및 ASEAN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를 위한 지역 등의 조건들이 부가되기도 한다.

한편, 상세조건에서는 최대 허용 가능한 투자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전자조작식품(GMO)이나 옥수수·콩·쌀·감자와 같은 주요 농작물(25ha를 초과하는 부지에 한해서 적용된다)은 최대 45%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곡물에 대한 경작이나 플랜테이션(이 역시 25ha를 초과하는 부지에 한해서 적용된다)에 대해서는 최대 95%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2007년 리스트에는 부지 크기에 따른 제한이 없이 외국인 지분을 95%까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0년 리스트로 인해 투자 제한이 강화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2007년에서 2010년 동안 25ha 미만의 부지에 외국인 투자가 허가된 사례가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제한이 강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불명확했던 투자 조건을 명문화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⁷⁾

이 밖에 석유·가스·원자력·지열·전력·발전소 설비 등은 최대 95%, 건설은 최대 67%,⁸⁾ 건설 컨설팅은 최대 55%, 관광·숙박·스파 등은 최대 51%, 자동차 수리·군장비시설·영화제작·화물운송·취업알선·일부 사교육(컴퓨터·언어·미용) 등은 최대 49%의 투자가 가능하다. 당구·볼링·수영·축구·테니스·골프와 같은 레저산업은 최대 49%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중소기업과 동업을 하는 경우 최대 51%의 투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인도네시아 동부지역(Kalimantan, Sulawesi, East Nusa Tenggara)과 Bengkulu, Jambi와 같은 지역에서는 최대 100%의 투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7) 전성우, '인도네시아-네거티브 투자 리스트', 법률신문 2012. 2. 9.

8) '인도네시아 유한책임회사법 상 정관 변경 등의 특별결의 사항에 대한 의사 정족이 총 지분의 2/3(66.6%), 의결 정족이 참석 지분의 2/3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지분 제한을 67%까지 허용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변경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성우, '인도네시아-네거티브 투자 리스트', 법률신문 2012. 2. 9.

7) 세금 관련 인센티브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편의에 대한 국내·외 투자에 대하여 동등한 처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 확장 및 새로운 투자의 유치를 원하는 모든 투자자들에 대하여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Art. 18(1)~(2)), 여기서 사업 확장 및 새로운 투자유치를 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은 소득세 할인, 설비·제품·자재 등에 대한 면세, 원료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 면제, 감가상각 인정, 부동산세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다(Art. 18(4)).

정부는 또한 식품가공업, 포장업, 플라스틱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가구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세금지원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 Government Regulations No.1 of 2007 regarding the Facility of Income Tax for Investment on Certain Business Sectors or Regions
- Ministry of Finance No.16/PML/03/2007 regarding Granting Income Tax Facilities for Investment on Certain Business Sectors or Certain Regions
- Directorate General of Tax No. Per 67/PJ/07 of 2007 regarding Procedure of Granting Income Tax for Investment on Certain Business Sectors and/or Certain Regions 등이 이에 해당한다.

8) 통합 일원화 서비스

‘통합 일원화 서비스(One-Stop Integrated Service)’는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의 편의, 회계기능 및 투자에 대한 정보를 조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Art. 26(1)). 통합 일원화 서비스는 허가업무절차에 관하여 권한 있는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투자분야의 행정청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된다(Art. 26(2)). 즉 일원화 서비스는 허가권이 있는 기관이나 행정청으로부터의 권한 위임과 지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서 BKPM은 채굴·석유·가스분야, 은행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허가절차를 진행하는 단독 기구가 된다. 통합 서비스의 이행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와 더불어 통합 서비스 기구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9) 분쟁의 해결

신 투자법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모든 투자자들이 포함된 모든 투자분쟁에 대하

여 양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 중재,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또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입각한 재판을 통해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Art. 32(2)).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내 투자자들 사이의 분쟁의 경우 중재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Art. 32(3)),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Art. 32(4)).

Ⅲ. 마치며

2억 4천만이라는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인구나 한반도의 9배에 이르는 국토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경제의 불황기였던 2010년에만 6%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2년 6.5%의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멕시코, 한국, 터키와 더불어 성장국가군으로 선정된 국가이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는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지정학적·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와 제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구책과 개선책이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967년 외국인 투자법과 1968년 내국인 투자법을 종합해서 투자 전반에 대한 골격을 재정비한 인도네시아의 신 투자법은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를 기초로 하여,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 과실송금 이전의 자유, 조세혜택, 재산권 강화, 통합 일원화 서비스제도의 시행, 투자분쟁의 국제중재 처리 규정 등 투자환경 개선 규정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신 투자법에 따라 BKPM은 각 부처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모든 승인권한을 위임 받아 인·허가에 대한 일원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개선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사업 관련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은 여전해서, BKPM에 의하여 완전한 일원화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07년 제정되어 2010년 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 또한 일부 분야에 대한 제한의 강화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개정될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 또한 외국인들에게 보다 많은 분야를 개방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